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6. 25 선고 2019나13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6. 25 선고 2019나135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3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김정화

변론 종결2020. 5. 21.

판결 선고2020. 6. 25.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3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4. 15.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8. 4. 18. 위 돈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4. 29. 수표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5. 16.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잔금 중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합계 8,166만 원 중 6,9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였고(원고는 위 각 돈의 합계가 7,16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아파트 취득자금 중 1/2 이상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G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적어도 1/2을 부담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1/2인 127,1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여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② K은 잔금을 계약서에서 정해진 잔금일인 2008. 4. 22.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2008. 4. 29. 및 2008. 5. 16. 인출한 수표와 현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피고와 피고의 딸이 와서 직접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잔금지급일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과 인출은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인출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과 가깝다고 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G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C에게 G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G아파트 매매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구

판사이재환

판사전경옥